

# 코로나19 위기와 프랑스의 계절 이주노동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태훈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 박사과정)

## ■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농장 작업의 1/4 이상이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의 많은 국가가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계절 이주노동자<sup>1)</sup>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야기한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인해 농업부문(특히 농번기)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급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도록 한다.<sup>2)</sup>

## ■ 프랑스의 농업부문 계절노동자 현황

EU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EU 15개국의 농업부문 연간 총작업량의 42%를 임시노동자가 담당한다. 프랑스의 경우 농업부문의 계절노동자는 53만 2천 명으로 농업부문 임금

1) 계절 이주노동자는 일시적으로 계절에 따른 활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EU로 이주한 제 3국민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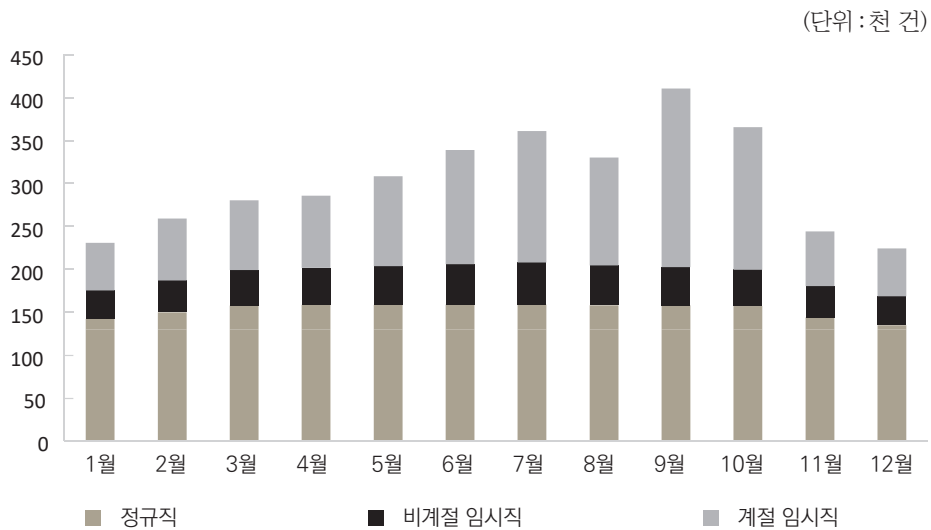
2)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Mitaritonna, C. and L. Ragot(2020), "After Covid-19, Will Seasonal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 Europe be Replaced by Robots?", <http://www.cepii.fr> (검색일: 2021. 6.12)).

노동자의 71%를 차지하며, 연간 총작업량의 34%(2010년 기준 26%)를 담당한다. 이 수치는 주변 국가인 이탈리아보다는 낮고(계절노동자는 93만 2천 명으로 임금노동자의 90%를 차지하며 연간 총작업량의 59%를 담당)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계절노동자는 6만 4천 명으로 임금노동자의 37%를 차지함).<sup>3)</sup>

계절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프랑스의 경우(그림 1 참조), 유효한 노동계약 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하며 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9월과 가장 적은 12월을 비교하면 1.82:1에 달한다. 또한 계절 이주노동자의 역할은 좀 더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특히 크게 작용한다(그림 2 참조). 과일류의 경우 한 해 전반에 걸쳐 계절노동 계약 건수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가을경엔 노동계약의 80%를 계절노동자가 차지하게 된다.

프랑스의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는 시골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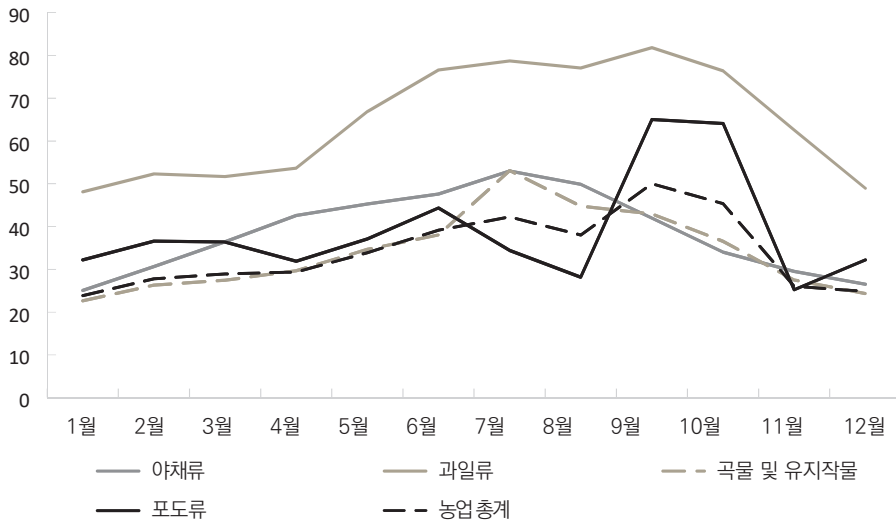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 내 농업부문 노동자 월별 유효 계약 건수



자료: 농업협동조합(Mutualité sociale agricole), Mitaritonna, C. and L. Ragot(2020), “After Covid-19, will Seasonal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 Europe be Replaced by Robots?”에서 재인용.

3) 영국 내 계절 이주노동자의 연간 총작업량에 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그림 2] 부문별 계절노동 계약 비율



자료 : 농업협동조합(Mutualité sociale agricole), Mitaritonna, C. and L. Ragot(2020), “After Covid-19, will Seasonal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 Europe be Replaced by Robots?”에서 재인용.

1951년 이탈리아, 1961년 스페인, 1963년 모로코, 튀니지, 포르투갈 등 주변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농업부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려되었으므로 경제위기나 우호적이지 않은 이주 정책이 만연한 와중에도 계절 이주노동은 지속되거나 심지어 장려되기도 했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수확기 또는 이식기에 필수적인 인력으로서 존재해 온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기준 농업부문 내 임시직 노동자 중 계절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18.8%였으나 2016년에는 24%로 증가하는 등 계절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 왔다(표 1 참조). 이 통계는 불법 이주자나 EU 밖에 위치한 인력서비스 업체를 이용한 계절 이주노동자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다.

2020년 3월 프랑스 농업부는 다음 3개월 동안 20만여 명의 추가적인 농장 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절 이주노동자의 유입 없이 노동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다.

<표 1> 출신 국가별 농업부문 내 임시직 노동자 추이

(단위: 천 명)

	2002년	2007년	2010년	2016년
자국민	634.0	565.0	520.8	461.8
계절 이주노동자 계	130.7	123	121.3	146.6
EU 회원국	35.0	30.3	29.5	45.6
비EU 회원국	58.0	72.3	70.0	83.3
N/A	37.5	20.7	21.9	17.6

자료: 농업협동조합(Mutualité sociale agricole), Mitaritonna, C. and L. Ragot(2020), “After Covid-19, will Seasonal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 Europe be Replaced by Robots?”에서 재인용.

## ■ 농업부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정책<sup>4)</sup>

3월과 4월은 수확을 시작하고 다음 수확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유럽 정부들은 농업부문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수확기에 이르러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프랑스에 도입된 정책들은 크게 세 가지이다.

- **국내 유휴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대체**: 많은 EU 국가가 봉쇄정책으로 인해 휴직상태였던 비필수 부문의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 3월 24일 농업부 장관이 직접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나 실업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농장에서 일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들과 농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웹사이트(<https://desbraspourtonassiette.wizi.farm>)를 구축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농업부문 노동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실업수당과 농업부문에서의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끔 하였다. 이 플랫폼에는 2020년 4월 23일 기준 30만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만 5천 명이 5천여 개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발표됐다. 또한 프랑스의 많은 지방정부는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난민수용소에 연락을 취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단기계약으로 난민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파리 부근의 셴에마른(Seine-et-Marne) 데파르트망의 경

4) EMN France(2020), “Attracting and Protecting Seasonal Workers from Third Countries in France”,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 (검색일: 2021.6.12).

우 봉쇄기간 동안 50명이 넘는 난민들에게 지역 농장업체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 **현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 완화**: 계절노동자 중 이주자 비율이 24%인 프랑스의 경우 주말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25% 연장한 주 60시간 노동을 허용했다(35시간 이상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또한 프랑스 정부는 보건위기 시 초과 근무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프랑스에 체류 중인 제3국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용이하게 해주고, 2020년 4월 2일부로 취업 허가증 취득 절차도 단순화시켰다. 추가로 2020년 6월 17일 개정된 법안을 통해 3월 16일과 6월 15일 사이에 체류가 만료되는 계절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2개월 기간 내에 9개월(현행 6개월)로 연장하였다.
- **신규 계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건강상태 요구**: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국 노동자들보다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력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고안되었다. EU 회원국 또는 쉥겐 지역, 영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국민이거나 거주민일 경우 농업부문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프랑스에 이주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들은 기타 형식적인 절차 없이 입국과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증상이 없음을 신고하는 국제 여행신고서<sup>5)</sup>(당사자와 사용자 각 1부)와 고용신고서, 고용계약 확인서 그리고 프랑스 농장에 의한 고용계약서 중 하나를 지참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류의 경우 총생산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로 크기 때문에 노동비용이나 생산성 측면에서의 혼란은 최종 상품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코로나19는 유럽의 주요 농업국가로 EU 전체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 동일한 악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경쟁이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프랑스 생산자들은 생산비용의 증가로부터 보호되었지만, 많은 소비자가 국내 제품의 가격 상승과 부족한 수입 대체재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생산성 하락, 운송비용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과일 및 채소류의 가격이 1차 봉쇄기간 동안 약 9%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높은 가격은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가격 경쟁력을 회복시킬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5) 프랑스 내무부 웹사이트 참고,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Attestation-de-deplacement-et-de-voyage> (검색일: 2021.6.12).

## ■ 계절 이주노동자의 미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와 이에 따른 국경 폐쇄는 계절 이주노동자의 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유럽국가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숙련된 계절 이주노동자를 대신할 방안은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상당한 제품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등 어려움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국경 봉쇄가 지속되어 계절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계절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나라로 입국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초래한 대규모의 일시적 충격은 농업부문에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농장주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AI, 로봇, 위성 데이터 기술로 농업부문을 혁신하고 5~10년 이내에 로봇에 의한 대규모 수확이 이루어진다면 인력부족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 ■ 결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필연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의 입국을 제한시켰고 이는 유럽국가들의 농업부문 내 계절 이주노동자의 주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고려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로봇 도입을 통해 계절 이주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다음 5~10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또한 2017년부터 계절노동자 제도(농번기 농가를 위한 90일짜리 단기 노동비자를 발급)를 확대 시행해오고 있으나 조직적 불법 인력 공급이 계속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긴 역사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유럽 계절 이주노동의 구조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11**